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관련 수가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요양병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수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2.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요양병원 코로나19	AH03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20.63점 (1,620원)

3. 산정기준

요양병원의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조기발견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며,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함

*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 가능

- 1)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염관련 업무
 - (가)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처리
 - (나) 병원감염 발생 감시, 병원감염관리 및 대책,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 (다)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 (라) 환자 및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
 - (마)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2)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의료기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
- 3) 종사자(간병인 등)에 대하여 매일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및 시설관리 강화

4.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가. 입원환자 1일당* 1회 산정 (낮병동 제외)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나.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 부담금은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않음

※ 질의응답 4번 참고

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하여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인력 기 신고 기관 → 재신고 불필요

5. 적용기간: **코로나 19 재유행 기간 고려 2022.8.1.부터 2022.9.30.(10.1. 0시 종료)까지 한시적 적용**

6. 청구방법

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를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산정 가능함

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1) 2022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신설된 수가코드로 산정

2)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년 8월 16일부터 가능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신설된 수가코드의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 실시일 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병원 감염예방·정책가산료’ 산정 방법은?	○ 정액수가 및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 시 산정 가능함
2	입원 1일당 1회 산정의 의미는?	○ 입원료 산정기준의 입원 1일당 1회이며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 낮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수가코드 AH034, AH038)와 중복산정 가능한지?	○ 동일한 기간에 동시 산정할 수 없음
4	‘요양병원 감염예방·정책가산료’ 본인부담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요양병원 입원환자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의 본인부담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업무」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5	‘요양병원 감염예방·정책가산’ 관련하여 인력신고 필요한지?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수가코드 AH034)의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는 추가 신고 불필요 * 단,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함
6	의료기관인증 평가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기관만 산정가능한지?	○ 정책 가산수가로 인증여부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
7	‘요양병원 감염예방·정책가산료’ 명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 ‘요양병원 감염예방·정책가산료’와 입원료는 하나의 명세서로 작성하며 ○ 신설된 수가코드의 최초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기재함